

● 제305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2. 7.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김정태 의원 외 10명
- 나. 제안일 : 2022. 1. 21.
- 다. 회부일 : 2022. 1. 25.
- 라. 의안번호 : 304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시민과 밀접한 여러 현안 과제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모를 정례화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용역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긴급하거나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리’의 뜻을 선정된 연구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모든 업무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 연구용역 내실화와 시민의 참여 보장을 위해 연구용역 과제의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 연구기관 공모 방식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등).
-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위 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등 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 ‘관리’에 대한 재정의에 따라 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10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과 관련해 그 과제 선정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긴급한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며, 그 외 연구용역의 체계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연구용역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과제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고자 제안되었음.

2 연구용역의 ‘관리’ 관련 조항 정비(안 제2조제2호 및 제10조제1항)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 제2조(정의)는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관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은 ‘관리’에 대해 현행 조문의 “연구용역 과제 공모부터 종료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개정해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모든 업무”로 정의하였음.

<표-1> 제2조의 신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_____ _____.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리”란 연구용역 과제 공모부터 종료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2. _____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_____ _____.

- ‘관리’ 개념의 정의에 “품질향상을 위한”이라는 목적을 밝히고, 그 범위를 과제 선정 이후부터로 한정된 것은, 연구용역과 관련해 매우 중요하지만 흔히 간과되는 목적을 명시하고 그 목적에 맞게 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부합하는 개정으로 판단됨.
- 또한 조례안 제10조에서 관리 업무를 입법담당관 외에 상임위원회도 함께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임위원회가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가 책임감을 갖고 연구용역 과제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표-2> 제10조제1항의 신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연구용역의 관리는 <u>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상임위원회 소관 과제는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와 관련한 업무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한다.</u>	제10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_____ 다음 _____ 따라 <u>입법담당관 및 상임위원회에서</u> _____. <단서 삭제>

- 다만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7조에 따르면 “입법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입법담당관 사무로 규정되어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낳을 수 있음.¹⁾

3 연구용역 과제의 아이디어 공모에 시민 참여 보장(안 제6조제2항 신설)

- 안 제6조제2항은 연구용역 내실화와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해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1) 현재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전문위원 사무 가운데 하나로 연구용역을 포함하고 있음.

<표-3> 제6조의 신규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생략) <신설>	제6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의장은 연구용역을 내실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의 절차·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현행 규정에서는 과제 제안 주체가 의회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로 한정되어 있고(조례 제6조), 이들 주체가 관료적 편향성 등의 이유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주제를 제안하는 데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는 보완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임.
- 다만 아이디어 공모로 인해 기존 의회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가 제안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있어도 배정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각 부서나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된 과제와 중복되었을 때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 명확하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의 취지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내실화”한다는 것은 이 조문에 적합하지 않은 모호한 표현으로 보임. 내실화의 사전적 정의가 “내적인 가치나 충실성을 다진다”는 의미이므로 시민이 참여하는 공모에 의해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라면, 내실화보다는 “연구용역의 주제를 다양화”한다는 표현이 이 조항의 취지에 더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4 연구기관 공모방식에 대한 예외 규정(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등)

- 안 제8조제1항은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하고, 의장이 긴급하거나 시급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장과 협의한 과제에 대해서는 공모 방식에 대한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음.

<표-4> 제8조제1항의 신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연구기관의 공모)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제8조(연구기관의 공모) ① 제7조에 따른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긴급하거나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개정 조항은 거의 같은 뜻의 ‘긴급’과 ‘시급’이 병렬되어 있는데²⁾ 두 단어 모두 매우 주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조례 규정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따르거나 이와 유사한 구체적인 예외 성립 조건을 나열해서 밝혀줄 필요가 있음.

5 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규정(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 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은 현행 조항의 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 방식을 개정해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2)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긴급은 “긴요하고 급함”, 시급은 “시각을 다룰 만큼 몹시 절박하고 급함”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다음 국어사전에서도 긴급은 “매우 급함”, 시급은 “시각을 다루어야 할 만큼 몹시 급함”으로 정의되어 있음.

구체적인 사항은 상위 법령을 따르도록 하였음.

<표-5> 제9조 신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① (생략)</p> <p>② <u>평가위원회 위원은 과제 관련 공무원,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u></p> <p>③ <u>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u></p>	<p>제9조(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u>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u></p> <p>③ <u>입법담당관과 상임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제안된 소관 연구용역 과제의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u></p>

- 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관련 상위 법령에 제시된 기준을 따르도록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관장하는 각종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담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잦은 개정을 고려해 조례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한편 개정안 제9조제3항에서 “입법담당관과 상임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제안된 소관 연구용역 과제의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는 조문은 그 의미가 모호한데, 입법담당관과 상임위원회 구성원이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인지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한 만큼, “평가위원회 회의”라고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음.

6 종합 의견

- 본 개정안 중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선정과 관련해 아이디어 공모 형식으로 시민 참여를 보장한 규정은 연구용역 과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 확산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됨.
- 또한 연구용역 ‘관리’에 대해 그 목적 및 업무 범위와 주체를 명확히 정의한 것은 연구용역 과제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 다만 일부 조항(안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은 조문의 의미를 분명히 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

<표-6> 현행 조례 및 개정안,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6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6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의장은 연구용역을 내실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의 절차·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p>	<p>제6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의장은 연구용역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의 절차·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p>
<p>제8조(연구기관의 공모) 의회 사무처 입법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을 공모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8조(연구기관의 공모) ① 제7조에 따른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긴급하거나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공모와 관련된 업무는 입법담당관이 수행한다.</p>	<p>제8조(연구기관의 공모) ① 제7조에 따른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p> <p>②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9조(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① (생략)</p> <p>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과제 관련 공무원,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p> <p>③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p>	<p>제9조(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p> <p>③ 입법담당관과 상임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제안된 소관 연구용역 과제의 평가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p>	<p>제9조(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조례안과 같음)</p> <p>③ 입법담당관과 상임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제안된 소관 연구용역 과제의 평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p>